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춘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554

발의연월일: 2025. 5. 20.

발 의 자:정춘생·강경숙·황운하

김선민 • 이해민 • 서왕진

용혜인 · 김준형 · 차규근

한정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에게 일정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 그러나 헌법적 책임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파면되거나,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까지 예우를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고, 법치주의와 정의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.

특히,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자나 「형법」상 내란·외환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한 중대한 배신행위를 한 것이라 할 수 있고, 이들에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계속제공하는 것은 예우 제도의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음.

이에, 이러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

우 대상에서 명백히 제외함으로써,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예우 제도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7조).

법률 제 호

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"를 "본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형법」상 내란 또는 외환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7조(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) ①	제7조(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) ①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	②	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			
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	본		
<u>를 제외하고는 이</u> 법에 따른 전			
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			
아니한다.		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5. 「형법」상 내란 또는 외환		
	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		
	<u>자</u>		